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## 심 사 보 고 서

2007. 3. 28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審 査 經 過

- 가. 제출일자 : 2007년 3월 19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22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07년 3월 26일)

### 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 제안 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유 종 상 )

#### 가. 제 안 이 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골자

-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,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·관·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(안 제2조의2)
-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-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(안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6)
-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회계 관직을 조정함(안 제4조)

### 3.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 ( 專 門 委 員 이 남 식 )

- 2006.1.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관련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영규모는 2억 5천6백만원임.

### 4. 審 査 結 課 : 原 案 可 決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3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규정 신설 (안 제2조의2)
-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(안 제3조제4항)
-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설치 등 규정 신설 (안 제3조의2 내지 안 제3조의6)
- 기금회계직공무원의 책임 등 관계 규정 개정 (안 제4조)
- 기금의 결산에 대한 규정 신설 (안 제4조의2)

## 3. 참고사항

- 관련근거
  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
 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
 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입법예고 : 2006. 10. 17. ~ 11. 8.

따로붙임 : 1)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운용 및 관리”를 “운용·관리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 다음에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기금의 운용계획)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·관·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④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.

제3조 다음에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구청장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 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청소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

1. 기획예산과장, 재무과장
2.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
3.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

④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3조의3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조의4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
2. 기금운용 성과분석
3. 주요항목인 장·관·항의 지출금액 변경
4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결산
5.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.

제3조의5(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

개최하되,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조의6(간사 및 수당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청소관리담당주사가 된다.

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기금회계직공무원)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②기금운용관은 청소과장으로, 기금출납원은 청소관리담당주사로 한다.

③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조 다음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기금의 결산)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, 운용성과분석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중 “교육부장관”을 “교육인적자원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호 중 “방송통신대학”을 “한국방송통신대학교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소속 환경미화원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<b>운용 및 관리</b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b>운용·관리</b> ----- -----</p>
<p>제2조(기금구성) ① (생략) ② <b>구청장</b>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기금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b>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청장</b>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 ----- -----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조의2(기금의 운용계획) ① <b>구청장</b>은 매 회계연도마다 <b>기금운용계획</b>을 수립하여야 하며,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.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·관·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금운용·관리) ① ~ ② (생략)	제3조(기금운용·관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④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.
<신 설>	제3조의2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구청장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청소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 1. 기획예산과장, 재무과장 2.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.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⑤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		<신 설>	제3조의3(위원장의 직무)	<p>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.</p> <p>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
		<신 설>	제3조의4(위원회의 기능)	<p>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</li> <li>2. 기금운용 성과분석</li> <li>3. 주요항목인 장·관·항의 지출금액 변경</li> <li>4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결산</li> <li>5.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
		<신 설>	제3조의5(위원회의 운영)	<p>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,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.</p> <p>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
		<신 설>	제3조의6(간사 및 수당)	<p>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청소관리담당주사가 된다.</p> <p>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
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금회계직공무원)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,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 명령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②기금의 회계직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</p>	<p>제4조(기금회계직공무원)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.</p> <p>②기금운용관은 청소과장으로, 기금출납원은 청소관리담당주사로 한다.</p> <p>③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4조의2(기금의 결산)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, 운용성과분석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>제5조(대여대상)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, 대학(대학교 포함) 및 기타 <u>교육부장관</u>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.</p>	<p>제5조(대여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교육인적자원부장관</u> ----- ----- .</p>
<p>제6조 (대여제한대상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방송통신대학</u>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6조 (대여제한대상) ----- ----- 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한국방송통신대학교</u> -----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